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7.1.2] [해양수산부령 제217호, 2017.1.2, 타법개정]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7.1.3] [해양수산부령 제218호, 2017.1.3, 일부개정]
제17조(권리·의무의 승계신고) ①·② (생략)	제17조(권리·의무의 승계신고) ①·② (현행과 같음)
<u><신설></u>	<u>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u>
제18조(휴업·폐업의 신고) (생략)	제18조(휴업·폐업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u><신설></u>	<u>② 제1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틀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u>
제34조(인증심사의 신청) 법 제47조제1항 에 따른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인증심사(이하 “인증심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사업장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신청서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선박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대행기관(이하 “정부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인증심사의 신청) ----- ----- ----- ----- ----- ----- ----- ----- ----- ----- ----- ----- ----- ----- ----- ----- ----- -----.
<u>1. 최초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경우</u> <u>가. 사업장: 안전관리체제 관련 서류 목록, 사업개요·조직 및 보유선박 현황에 관한 서류 및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u> <u>나. 선박: 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u>	<u>1. 공통 제출서류: 「해운법 시행규칙」 제2조제6항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또는 같은 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증 사본 등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u> <u>다만, 인증심사의 신청 시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49조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증서 또는 임시선박안전관리</u>

		<u>증서를 교부받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u>
2. <u>갱신인증심사 또는 중간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경우</u>	2. <u>개별 제출서류</u>	
가. 사업장: 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가. 최초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나. 선박: 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및 선박안전관리증서 사본	나. 갱신인증심사 또는 중간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신 설>	다. 임시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제37조(인증심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선박의 항행) 법 제47조제2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7조(인증심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선박의 항행)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외국으로부터 선박을 구입하여 <u>국내</u> 로 국제항해를 하는 경우	4. ----- <u>국내(국내항으로 입항 전 수리·검사 등을 위하여 외국항으로 항해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u> -----	
5. (생략)	5. (현행과 같음)	
제47조(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안전관리대행업 등록(변경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7조(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신청) ① ----- ----- ----- ----- ----- ----- ----- ----- ----- ----- ----- ----- ----- ----- ----- ----- ----- ----- -----.	
1. 등록: 다음 각 목의 서류	1. -----	
가. ~ 라. (생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5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신설>

마.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5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바. 안전관리를 대행하고자 하는 선박을 확보한 경우에는 안전관리를 대행하려는 선박이 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 체제를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신청 시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 등록증을 발급받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2. 변경등록: 변경사유서

②·③ (생략)

<신설>

2. 변경등록: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변경사유서

나. 제1호 바목의 서류(안전관리대행 선박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안전관리대행업의 변경등록신청 시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 등록증을 발급받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의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7.1.3.] [해양수산부령 제218호, 2017.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

전체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인증심사를 신청하거나 안전관리대행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해당 선박이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인증심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도 선박의 항행이 가능한 경우에 외국으로부터 선박을 구입하여 국내항으로 입항하기 전에 수리·검사 등을 위하여 외국항으로 항해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한편,

선박출항통제의 대상 선박을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여객선과 그 외의 선박으로 구분하여 선박출항통제의 기준을 정비하고, 수상레저기구, 낚시어선 등은 개별법령에 따른 출항통제를 따르도록 하며, 일정한 크기 이상인 부선(艇船)이나 구조물을 끌거나 미는 선박의 경우에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체제의 내용에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의 선박 방문 및 확인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등 예선(曳船) 및 부선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

◎ 해양수산부령 제218호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월 3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제34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통 제출서류: 「해운법 시행규칙」 제2조제6항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또는 같은 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증 사본 등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인증심사의 신청 시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49

조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증서 또는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를 교부받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2. 개별 제출서류

가. 최초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1) 사업장: 안전관리체제 관련 서류 목록, 사업개요·조직 및 보유선박 현황에 관한 서류 및 임시안전관리 적합증서 사본

2) 선박: 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나. 간접인증심사 또는 중간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1) 사업장: 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2) 선박: 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및 선박안전관리증서 사본

다. 임시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1) 사업장: 회사 조직도 및 부서별 업무개요에 관한 서류 및 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새로운 종류의 선박을 추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새로운 종류의 선박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 선박: 새로 추가된 선박을 반영한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3) 같은 종류의 선박을 도입하는 경우에 해당 선박: 기존의 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제37조제4호 중 "국내"를 "국내(국내항으로 입항 전 수리·검사 등을 위하여 외국항으로 항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47조제1항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안전관리를 대행하고자 하는 선박을 확보한 경우에는 안전관리를 대행하려는 선박이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신청 시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 등록증을 발급받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4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변경등록: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변경사유서

나. 제1호바목의 서류(안전관리대행 선박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안전관리대행업의 변경등록신청 시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 등록증을 발급받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4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의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5)의 행정처분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12)의 1차위반란 중 "영업정지"를 "경고 또는 영업정지"로 한다.

경고	영업정지 6개월 (다만, 법인의 대표자의 결격 사유 해소 시 행정처분 취소)	등록취소 (다만, 법인의 대표자의 결격 사유 해소 시 행정처분 취소)	
----	--	---	--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1 제2호 비고란 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란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선박은"을 "선박(추진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선박에 결합하여 운항하는 압항부선은 제외한다)은"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 비고란 제3호를 삭제한다.

바. 카목3):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의 선박 방문 및 확인에 관한 사항

별표 13의2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5) 중 "사업자 또는 운영선박이"를 "사업자가"로 하며, 같은 목 7) 중 "보통(medium) 이하"를 "보통(medium) 미만"으로 한다.

가. 최근 3년간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되는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평가지수가 같은 종류의 사업자 중 상위 100분의 1 이내일 것. 다만, 같은 종류의 사업자가 100개사 미만인 경우에는 상위 1개사를 지정할 수 있다.

$$\text{해사안전 우수사업자 평가지수(100점)} = \text{저사고율}(60점) + \text{안전경영 지표}(40점)$$

1) 저사고율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저사고율} = \frac{\text{업체별 해양사고율}}{\text{총 평가대상의 해양사고율}} + \frac{\text{업체별 사상자율}}{\text{총 평가대상의 사상자율}}$$

2) 안전경영 지표는 다음의 항목을 평가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항목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나, 같은 종류의 사업자에게는 동일한 항목을 적용한다.

- 가) 사업자의 고용안정성
- 나) 선원에 대한 투자 정도
- 다) 안전관리전문인력에 대한 투자 정도
- 라) 선박의 안전관리 수준 정도
- 마) 안전관리 활동의 결과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기간란 중 "10일"을 "5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의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첨부서류	<p>1. 공통 제출서류: 「해운법 시행규칙」 제2조제6항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또는 같은 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증 사본 등 「해사안전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인증심사의 신청 시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사안전법」 제49조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증서 또는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를 교부받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p> <p>2. 개별 제출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최초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관리체제 관련 서류 목록 2) 사업개요·조직 및 보유선박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3)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1부 나. 갱신인증심사 또는 중간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1부 다. 임시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사 조직도 및 부서별 업무개요에 관한 서류 1부 2) 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1부(새로운 종류의 선박을 추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radio"/>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2에 따른 수수료 <input type="radio"/> 정부대행기관에 신청하는 경우: 정부대행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별지 제14호서식의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첨부서류	<p>1. 공통 제출서류: 「해운법 시행규칙」 제2조제6항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또는 같은 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증 사본 등 「해사안전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인증심사의 신청 시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사안전법」 제49조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증서 또는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를 교부받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p> <p>2. 개별 제출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최초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1부 나. 갱신인증심사 또는 중간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1부 2) 선박안전관리증서 사본 1부 다. 임시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새로운 종류의 선박을 추가하는 경우: 새로 추가된 선박을 반영한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1부 2) 같은 종류의 선박을 도입하는 경우: 기존의 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1부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radio"/>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2에 따른 수수료 <input type="radio"/> 정부대행기관에 신청하는 경우: 정부대행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별지 제23호서식의 처리기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처리기간	신규등록 14일
	변경등록 5일

별지 제23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안전관리를 대행하고자 하는 선박을 확보한 경우에는 안전관리를 대행하려는 선박이 「해사안전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신청 시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 등록증을 발급받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23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변경등록

가. 변경사유서

나. 제1호바목의 서류(안전관리대행 선박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안전관리대행업의 변경등록신청 시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 등록증을 발급받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 및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대행업의 변경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호수역 입역허가 및 안전관리대행업 등록·변경등록의 처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보호수역 입역허가 또는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0]

선박출항통제의 기준 및 절차(제31조 관련)

1.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여객선 및 여객용 수면비행선박

가. 적용선박: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여객선 중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여객선 및 여객용 수면비행선박(이하 "내항여객선"이라 한다)

나. 출항통제권자: 해양경비안전서장

다. 기상상태별 출항통제선박 및 통제절차

기상상태	출항통제선박	통제절차
풍랑·폭풍 해일주의보	1)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가목에 따른 평수구역(이하 "평수구역"이라 한다) 밖을 운항하는 내항여객선. 다만,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상예보구역 중 앞바다(이하 이 표에서 "앞바다"라고 한다)에서 운항하는 내항여객선과 총톤수 2,000톤 이상 내항여객선에 대해서는 운항항로의 해상상태가 「해운법」 제21	가) 「해운법」 제22조에 따른 운항관리자(이하 이 표에서 "운항관리자"라 한다)는 풍랑·폭풍해일주의보 발효 시 기상상황을 종합분석(다음 기항지도착예정시간 내에 출항정지조건등에 해당하는 기상특보·예보의 발표 여부를 포함하여야 한다)할 것 나) 운항관리자는 해당 내항여객선의 출항정지조건등을 확인하고 선장의 의견을 들을 것 다) 운항관리자는 앞바다에서 운항하는 내항여객선 및 총톤수 2,000톤 이상 내항여객선에 대하여 종합분석된 해상상태가 출항정지조건등에는 해당하지 않아 출항을 허용하려는 경우에는

		<p>조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의 출항정지조건 · 운항정지조건(이하 "출항정지조건등"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않는 내항여객선에 한정하여 출항을 허용할 수 있다.</p> <p>2) 평수구역 안에서 운항하는 내항여객선. 다만, 운항항로의 해상상태가 해당 내항여객선의 출항정지조건등에 해당하여 안전운항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운항을 통제할 수 있다.</p>	<p>출항통제권자에게 보고할 것</p> <p>라) 출항통제권자는 해상상태 및 운항관리자의 보고 등을 고려하여 해당 내항여객선의 출항 여부를 결정할 것</p> <p>가) 운항관리자는 평수구역 안에서 운항하는 내항여객선이 출항통제선박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출항통제권자에게 보고할 것</p> <p>나) 출항통제권자는 해상상태 및 운항관리자의 보고 등을 고려하여 해당 내항여객선의 출항 여부를 결정할 것</p>
풍랑 · 폭풍 해일경보, 태풍주의보 · 경보	모든 내항여객선	출항통제권자는 해당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해당 내항여객선의 출항을 통제하여야 한다.	
시계 제한 시	시정 1킬로 미터 이내	모든 내항여객선(여객용 수면비행선박은 제외한다)	출항통제권자는 시계제한 시 해당 내항여객선의 출항을 통제하여야 한다.
	시정 11킬 로미 터 이내	여객용 수면비행선박	

※ 비고

1. 기상특보의 발표 기준은 「기상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다.
2. "여객용 수면비행선박"이란 「해운법」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내항 정 기여객운송사업 또는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법」 제1 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수면비행선박을 말한다.
3. "총톤수"란 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에 기재된 톤수를 말한다.

2. 내항여객선 외의 선박

가. 적용선박: 내항여객선을 제외한 선박.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 박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 1)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 2)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어선
- 3)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유·도선

나. 출항통제권자: 지방해양수산청장

다. 기상상태별 출항통제선박 및 통제절차

기상상태	출항통제선박	통제절차
풍랑·폭풍해 일주의보	1) 평수구역 밖을 운항하는 선박 중 총 톤수 250톤 미만으로서 길이 35미터 미만의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선박 2)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예부선 결합선박 3) 수면비행선박(여객용 수면비행선박은 제외한다)	출항통제권자는 해당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시계제한 시 출항신고 선박의 총톤수·길이·항행구역 등을 확인하여 통제대상 여부를 판단한 후 해당 선박의 출항을 통제하여야 한다.
풍랑·폭풍해 일경보	1) 총톤수 1,000톤 미만으로서 길이 63미터 미만의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	

		는 선박 2)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예부선 결합선 박
태풍주의보 및 경보		1) 총톤수 7,000톤 미만의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선박 2)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예부선 결합선 박
시계 제한 시 0.5킬로 미터 이내	시정 11킬로 미터 이 내	1) 화물을 적재한 유조선·가스운반선 또는 화학제품운반선[향도선(嚮導船)을 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레이더 및 초단파 무선전화(VHF) 통신설비를 갖추지 않은 선박 수면비행선박(여객용 수면비행선박은 제외한다)

※ 참고

- 위 표에도 불구하고 어선의 출항통제에 관한 사항은 「선박안전 조업규칙」에 따라 안전조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바에 따라 기상특보 발효 시 조치사항을 적용한다.
- 출항통제권자는 선박의 안전운항 확보, 항만의 효율적 운영 또는 재난·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항통제를 완화하거나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총톤수" 및 "길이"란 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에 기재된 톤수 및 길이를 말한다. 이 경우 예부선 결합선박[추진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선박에 결합하여 운항하는 압항부선(押航艤船)은 제외한다]은 예선톤수만을 말한다.



[2017.1.3.] [218 , 2017.1.3.,
() 044 - 200 - 5821, 5820

1

1 () . 「 」

2 () 「 」 (" ") 2 6 "

2013.3.24.>

1. 1 300
2. 가 가 1
3. 1
4. 200 300
5. 2 3 가

1 . 가 . 「 」
2 .

3 <2014.11.14.>

4 () 2 17 "

. < 2013.3.24.>

- 1.
2. . .
3. . 가 . . 가
4. 2 3
5. .

2

5 (가) 8 2 가 1
가 . < 2015.12.17.>

1 가

가 . < 2015.12.17.>

6 () 9 1
. < 2015.12.17.>
1 가
. < 2015.12.17.>

7 () 10 2 (10 1
.) . <

2014.11.14.>

1. : 2
2. : 3.
3. : 4
1 1 2

1. . 가
2.
3. .

8 (가) 11 " "
. < 2013.3.24.>

1.
2.
3. (曳引船列) 가 200

9 <2015.11.2.>

10 () 14 1 1 " "
12 266
50 , 가
2013.3.24., 2014.11.14.>

3

11 () 15 1 " ") 5 , 15
2 (가
15 2 가 . 가 . . (" 가 ")
" ") 18 2 1
가 (" ")
가 (" ")
6 2 < 2014.11.14.>
15 4 18 2 1
가 4 ()
17 < 2014.11.14.>

3 5 6
가
가

< 2013.3.24., 2014.11.14.>
1 5 2 4
. < 2013.3.24.>

[2014.11.14.]

12 () . < 2013.3.24.,
2014.11.14.>

. < 2013.3.24., 2014.11.14.>

13 () 16 1 18 2 8
가

. < 2013.3.24., 2014.11.14., 2015.12.17.>

- 1.
- 2.
- 3.
- 4.
- 5.

1 16 1

가

. <

2014.11.14., 2015.12.17.>

14 () 17 1

- 1.
2. 11 4
3. 2

1 10

. < 2013.3.24.>

2 . < 2013.3.24.>

1.
2.
3. 가 ()

15 () 19 2 (" ")

7

19 2

5

() 7

ㄱ 36 1

. < 2013.3.24.>

2 7

6 . < 2013.3.24.>

3 7

. < 2013.3.24.>

16 () 19 2 "

. < 2013.3.24.>

	19	2				30
5			()		
					< 2013.3.24., 2014.4.8.>	
						10
			.<	2013.3.24.>		
1.						
2.						
3.						
2		,		.		
				.		
15	3					4
17	(•)	21	2	(
				가		53
					1	1
)
						.
						<
						2013.3.24., 2015.12.17.>
1.		:				
가.	8		.			
.		
2.		:				
가.	9		.			
.		
1			•		36	1
			•)
			•			.
			1		3	
						<
						2013.3.24.>
18	(•)	22	(53
				10	2	2
				.	.)
						.
)
17	2		.	<	2013.3.24., 2015.12.17., 2017.1.3.>	
1			가		,	
						.
			가			<
						2017.1.3.>
19	()	23	2	
		.				,
8						.
20	()	25	1	,
	(")	"	가	.
						.
1.						.
2.						.
3.						.
4.						.
5.						.
6.)

-
7. ()
21 () 27 2
1. .
2. .
3. .
4. ()
5.
6.
7.
8. (通航帶)
9.
10.
11.
12. 「1982」 211 6
가
- 22 () . 28 2
. < 2015.12.17.>
. 28 3
. < 2015.12.17.>
. 28 1 3
가 . < 2015.12.17.>
- 23 () 31 1
. < 2013.3.24., 2015.12.17.>
1. .
2.
3.
4.
5.
1
. < 2015.12.17.>
- 24 (가) 32 1 가
. < 2015.12.17.>
1.
2. ()
3.
4.
5.
1
가
가 . < 2015.12.17.>

2 가
. < 2015.12.17. >

25 () 32 2 3 " . < 2013.3.24., 2015.8.4., 2015.12.17.>

- # 1. 「 」 4 가

2. 「 」 6 가

26 () 33 1 " "
「 」 . < 2013.3.24.>

27 (가) 34 3 11 1 가
11 가 ()

- . < 2014.11.19.>

1 가
가 .< 2014.11.19.>

28 <2015.11.2.>

29 () 37 1 " " " 「
」 26 . < 2013.3.24., 2013.5.23.>

30 () 37 1 4 " "
." < 2013.3.24.>

31 () 38 2 10 .

32 () 43 1 가
(" ")

2013.3.24., 2014.11.19., 2015.12.17.>

- 1.
 - 2.
 - 3.
 - 4.
 - 5.

1 가

4

33 () 46 1 4
(" ") 11 . < 2014.4.8.>

34 () 47 1 (" ")
13 14 48 1
(" ") . < 2015.12.17., 2017.1.3.>
1. : 「 」 2 6 46 2 .
5 , 49

2.

가.

1)

:

,

.

2)

:

1)

:

2)

:

1)

:

(

가

)

2)

가

:

가

3)

:

35 () 47 1 3 " "
. < 2013.3.24.>

1.

:

1

3

2.

:

2

6

6

1

3

.

,

36 () 47 1 5 "

<

2013.3.24., 2014.11.14.>

1.

56

1

2

2.

58

1

.

3. 「

」

2

1

가

47 1 5

, . < 2015.12.17.>

37 () 47 2 "

<

2013.3.24., 2013.5.23., 2017.1.3.>

-
1. 「 」 8 12
 ()
2. 「 」 18 1
 ()
3. . . 1
4. . . ()
5. 가 가
- 38** () 47 3 12 .
- 39** () 47 1 13 .
47 1 () . < 2014.11.14.>
1. :
2. : . . .
2 5 「 」
- 40** () 17 1 () 15 17 1 .
17 1 3 16 .
1.
2.
3. 48 2 . .
4.
5. 17 3 16 .
- 41** () 48 6 10 .
< 2013.3.24.>
- . < 2013.3.24.>
- 42** () 48 8
8 .
- 43** () 49 1 17 , 18 .
49 2 19 , 20 .
- 44** () 49 5 21 .
< 2015.12.17.>
-

		1	
	.< 2015.12.17.>		
45 () 49 8		
	,		
1.	:		
2.	3	:	
3.	3	:	
46 () 50 1		22
	.	< 2013.3.24.>	
	1	.	< 2013.3.24., 2015.12.17.>
47 () 51 1	() ())
23		.	『 』
36 1		.	. < 2013.5.23.,
2015.12.17., 2017.1.3.>			
1. :			
가.			
.	(, ,))
.	()		
가	52		
1) 『		가	: 가
	.	가	가
(Apostille)			
2) 『		가	: 가
	.	가	가
46 2			
.		,	
2			
2.	:		
가.			
.	1 (
1	,		
2	,		
).	1))
51 1	" "		
.	< 2013.3.24.>		
2015.12.17.>			

1.
2.
3.
1 3 30
. < 2017.1.3.>
48 () 54 2
8 .
49 () 55 1
. < 2015.12.17.>
55 2 . 60 1
. < 2015.12.17.>
55 2 . < 2015.12.17.>
가
50 () 56 1 2 (" ")
, . < 2013.3.24., 2015.12.17.>
56 3 . . 60 1
. < 2013.3.24., 2015.12.17.>
51 () 57 1 1 3 "
" . < 2013.3.24.>
1.
2. 55 2
3. 56 1
57 1 . < 2015.12.17.>
1. : , , ,
2.
3.
4. , , () 2
. < 2013.3.24.>
1. 「 」 45 1 , 60 2 , 63 1 , 64 1 65 1
, , ,
2. 「 」 「 」 32
3. 「 」 「 」 32
[2015.12.17.]
51 2() .) 57 2 1 ("
") . 13 2 .
3

57 2 3

1.

2.

가. 47 3 48 3
「 」 80 1 1 (67
)
「 」 43 1 2

3. 「 」 38 39 2

57 2 4

1 3

[2014.11.14.]

52 (.) 58 1 " "
. < 2013.3.24., 2014.11.14.>

1. 가

2. 가

3.

4. 가 가

5. , , ,

6. 58 1
7. 가 가

[2014.11.14.]

52 2() 58 4
27

[2014.11.14.]

53 () 61 1 14

5

54 () 68 1 2 " "
. < 2013.3.24.> 15

55 () 81 2 " "
. < 2013.3.24.>

56 () 84 3 " 가 "
16 . < 2013.3.24.>

57 () 97
가 .
. 3
[2014.11.14.]

58 () 3 ()
3 .
2015.12.17., 2017.1.2.>
1. 5 1 가 : 2017 1 1
2. 6 : 2017 1 1
3. 8 가 : 2017 1 1
4. 17 . : 2017 1 1
5. 18 . : 2017 1 1
6. 19 8 2 가 : 2017 1 1
7. 20 : 2017 1 1
8. 23 2 : 2017 1 1
9. <2017.1.2.>
10. <2017.1.2.>
11. 31 10 : 2017 1 1
12. 36 : 2017 1 1
12 2. 47 : 2017 1 1
13. 48 8 2 : 2017 1 1
14. <2017.1.2.>
15. 51 : 2017 1 1
16. <2017.1.2.>
[2014.11.14.]

< 218 ,2017.1.3.>

1 () . , 10 11 6

2 ()) 47 4 3

3 () 가 .) 1
23 가 .